

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; 1994. 4. 20.

발 의 자 : 내 무 위 원 장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와 더불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으로 신설 제정된 지역개발세의 세율체계가 낮아 세신설목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
- 도세조례를 개정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의 가감조정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하여 세수증대의 효과를 얻고자함.

□ 주요골자

-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 (50%증)
 - . 발전용수 : 발전에 이용되는 물 10m³당 1원 → 1원50전
 - . 지하수 : 개발하여 채수된 물 1m³당 10원 → 15원
 - . 지하자원 : 채광된 광물가액의 1,000분의 1 → 1,000분의 1.5

□ 칙 부

1. 충청북도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3. 관계법령 1부

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(과세표준및세율)중 “발전에 이용되는 물 10세제곱미터당 1원”을
“발전에 이용되는 물 10세제곱미터당 1원50전”으로 한다.

제43조(과세표준및세율)중 “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10원”을 채수된 물 1세제
곱미터당 15원”으로 한다.

제46조(과세표준및세율)중 “채광된 광물가액의 1,000분의 1”을 “채광된
광물가액의 1,000분의 1.5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4. 7.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
감면 하였거나,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에 예에
의한다.